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년 2월 16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년 2월 2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4년 2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4년 2월 16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- 가. 제안이유
  -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 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- 나. 주요내용
  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 - 구청장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(안 제3조 및 안 제4조)
  - 중장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(안 제6조)
  -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(안 제7조 및 제8조)
  -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제정안은 중장년 창업을 활성화하여 중장년 일자리 부족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됨.
- 주요내용은
  -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본 제정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 하였고
  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
  - 안 제4조에서는 중장년 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
  - 안 제6조에서는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년 창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
  - 안 제7조에서는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의 내용에 대하여
  - 안 제8조에서는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
  -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
- 전국 타시군구에 조례명이 「중장년 창업 지원」인 조례는 없으며, 우리구는 기업지원, 청년창업 2개의 조례에 창업관련 지원 규정이 있음.

구분	법규명	창업지원 사항
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	창업자, 예비창업자 교육비 지원(제13조)
	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창업 관련 사항 없음
	서울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	청년(39세 이하) 창업지원
	서울특별시 금천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	창업 관련 사항 없음
타시군구	○○○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(8개 지자체)	중장년 직업능력교육 및 취·창업 지원
	○○○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(13개 지자체)	창업 지원
	○○○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(31개 중 7개 지자체)	7개 지자체 창업 지원

- 중장년 창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업 지원을 통해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도 도움이 되며,
- 개인적 측면에서도 퇴직 후 자아실현 및 소득 보장 및 경제적 안정 확보,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유지 및 사회참여 확대로 사회, 개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됨
- 향후 집행부에서는 중장년 창업의 장·단점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대한 중장년의 적응 및 학습 등 중장년 창업과제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됨.
- 본 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

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